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207559(본소) 이혼 등
2017드단210989(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갑 (1981년생, 여)
주소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피고(반소원고) 을 (1977년생, 남)
주소 부산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 건 본 인 1. A
주소
등록기준지
2. B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017. 12. 6.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재산분할로,
 -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5. 8. **. 접수 제*호로 마친 전세금 1억 8,000만 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5. *. **.부터 2016. *. **.까지, 전세권자 *주식회사의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 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 12. 1.부터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1) 이 판결 선고 후부터 2019. 2. 28.까지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

(2) 2019. 3.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그 다음날 17:00까지(1박 2일)

나. 장소 : 피고(반소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다. 방법

(1) 이 판결 선고 후부터 2019. 2. 28.까지 : 피고(반소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주는 방법

(2) 2019. 3. 1.부터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 원고(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을 피고(반소원고)의 주거지로 데려다주고, 피고(반소원고)가 면접교섭이 끝나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려다주는 방법

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장소,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제2항, 제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제1항, 제5항과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8.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94,665,4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를 인수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30. 7. 27.까지는 월 100만 원, 그 다

음날부터 2033. 3. 19.까지는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다가 2010년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으며, 피고는 화가 나면 원고나 주위 사람(대리운전기사, 원고의 부모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는 2013. 말경 소파를 옮기는데 원고가 자신을 밀치고가서 손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때려 고막이 터지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 사건본인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화를 내면서 차 앞 유리를 쳐서 깨트리기도 하였으며, 2016. 7. 경 화가 나서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원고의 목을 잡아채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다툰 후에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00시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거나, 원고의 모 김**이 직접 와서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데려가기도 하였는데, 2016. 7.경 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가서 지내면서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다.

(4) 피고가 2016. *. *. 03시경 원고 부모의 집을 찾아가 잠자고 있던 사건본인들을 안아서 데리고 나가려 하고,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제지하면서 큰 소란이 있었고, 원고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다.

(6) 피고는 2016. 8.경 사건본인 B이 눈을 다쳐 치료받는 병원 앞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 문제로 김**과 다투다가 김**의 멱살을 잡고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워 김**이 경찰을 부르기도 하였다.

(7) 피고는 2016. 8. 이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자 여러 차례 원고의 거주지로 찾아갔고, 김**과 원고는 피고가 찾아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면 경찰에 신고하였다.

(8)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돈으로 구입한 00 자동차를 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6. 10.경 00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갔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의 전취지

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1) 혼인관계의 파탄 : 인정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있고, 원고는 피고와 다툼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친절에 가버리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원·피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2016. 7.경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 이후 사건본인들과 함께 친정에서 지내면서 피고와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는데 별거 후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 이후에도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는 등 갈등만 심화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2)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배우자 : 피고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친정에 의존하며 지낸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화를 내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원고에게 고통을 준 피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피고는 원고의 과소비, 피고 모친에 대한 부당 대우, 지나친 친절 의존 경향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과소비, 피고 모친에 대한 부당 대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와 다툰 후에는 친절으로 가서 지내는 등 친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친절으로 피신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및 책임 정도, 별거 이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사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4개월 정도 학원을 운영한 외에는 전업주부로 지냈다.

(2)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00 승용차 등을 구입해주었고, 원고에게 학원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0.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000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양대금 194,210,000원은 원고의 모 김**이 모두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2. 1. 2. 00시 **면에 있는 △△△△ 아파트(다음부터 '제1 △△△△ 아파트'라고 한다)를 224,189,000원에 취득하였다. 위 매수대금은 000 아파트 담보대출금, 피고가 마이너스 통장인 **은행 예금계좌(096-12-*****)에서 인출한 돈으로 충당하였다.

(5) 원고는 이00에게 제1 △△△△ 아파트를 2012. 1. 16.부터 24개월 동안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피고와 김**(김**으로부터 2011. 12. 28. 송금받은 6,8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에게 송금하였다.

(6) 원·피고는 000 아파트를 * 주식회사에게 1억 8,000만 원에 2015. *. **.부터 12개월 동안 전세를 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15. 8. **. 접수 제*호로 전세금 1억 8,000만 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5. *. **.부터 2016. *. **.까지로 하는 전세권(다음부터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위 전세금 중 135,623,910원으로

2015. 8. 21. 000 아파트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에게 2015. 8. 13.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합계 55,836,090원(김**이 송금한 1,146만 원을 포함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2015. 10. 30. 00시 **면에 있는 △△△△ 아파트(다음부터 '제2 △△△△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3,250만 원에 취득하였다. 위 매수대금 중 6,00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하고, 1억 원은 위 아파트에 관한 △△은행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김**, 원고의 외삼촌으로부터 빌려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5. 9. 2.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김**, 외삼촌에게 합계 6,000만 원 이상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수대금 내지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8) 원고는 2016. 7. 14. 제2 △△△△ 아파트를 남00에게 2016. *. **.부터 24개월 동안 2억 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585,135원으로 2016. 7. 26. 위 아파트에 관한 △△은행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고, 8,900만 원은 2016. 8. 1.과 그 다음날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피고 40%

[판단근거] 원고의 모 김**이 000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제1, 2 △△△△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송금한 돈과 담보대출금, 임대차보증금으로 마련하였고, 원고의 부모가 지원한 금액은 적은 점, 피고의 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이며,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한 점, 그밖에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목과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형평성, 사후 분쟁 예방 등을 고려하여, 원고 명의의 제1, 2 △△△△ 아파트는 원고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원·피고가 공유한 000 아파트는 원고가 그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는 피고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위와 같이 재산을 분배한 다음 앞서 정한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 몫

$$338,914,865\text{원} \times 40\% = 135,565,946\text{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 피고의 순재산을 가산한 금액

$$135,565,946\text{원} + 31,250,000\text{원} = 166,815,946\text{원}$$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할 재산분할금

$$9,065,946\text{원}(\text{위 } ②\text{항의 금액에서 피고가 이전받는 } 000\text{ 아파트 중 원고}$$

의 공유지분가액 1억 5,875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가 인수하는 위 아파트의 전세금 채

무 중 원고의 부담분 9,000만 원을 가산한 뒤, 원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8,9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④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③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900만 원

라. 소결론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000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자녀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로 지정함.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가 2016. 7.경 별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가 양육보조자(원고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원고 본인도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있는 점,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나이, 혼인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함.

나. 양육비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17. 12.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단근거]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위, 원·피고의 나이와 직업, 학력, 수입,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양육비 액수와 지급시기를 위와 같이 정함.

다. 면접교섭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생활환경, 당사자의 의사,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피고가 2017. 1.경 원고와 상의 없이 면접교섭 중 사건본인들을 데려가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한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본소와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윤재남

별지1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기장군 이하 생략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소유자등	순번	재산의 표시	가액(원)	인정근거	
원 고	적극 재산	1	000 아파트 중 1/2지분	158,750,000	갑 제6호증의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원고의 모 김**이 전액 지급하였으나, 원·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에게 해당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혼인기간, 혼인 중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때, 위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인정된다.
		2	제2 △△△△ 아파트	255,000,000	갑 제6호증의2, 을 제1호증의2의 각 기재 원고는 원고의 부모가 위 아파트들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2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제1, 2 △△△△ 아파트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마련한 돈,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금 등으로 구입한 부부공동재산이다.
		3	제1 △△△△ 아파트	245,000,000	갑 제6호증의3, 을 제1호증의3의 각 기재
		4	확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	변론의 전취지
		5	00 승용차	22,000,000	변론의 전취지
	6	제2 △△△△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보유금액	104,414,865	갑 제14호증의3, 갑 제20호증의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 **.부터 위 아파트를 남00에게 2억 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00,585,135원을 위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돈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다(피고에게 지급한 8,900만 원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 분할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반영한다).	
	소계			795,164,865	
	소극 재산	1	위 000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1/2	90,000,000	갑 제6호증의1의 기재
		2	제2 △△△△ 아파트	205,000,000	갑 제14호증의3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3	제1 △△△△ 아파트	130,000,000	갑 제1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 **.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과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14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 **.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혼인파탄 이후에 피고와 무관하게 체결한 계약이고, 증액된 금액을 부부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혼

				인과단 이전의 임대차보증금채무액만 재산분할대상으로 삼는다.	
		소계	425,000,000		
		원고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370,164,865		
피고	적극재산	1	000 아파트 중 1/2지분	158,750,000	갑 제6호증의1, 을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 승용차	10,000,000	변론의 전취지
			소계	168,750,000	
	소극재산	1	위 000 아파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1/2	90,000,000	갑 제6호증의1의 기재
		2	00은행 대출채무(마이너스통장)	110,000,000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소계	200,000,000	
			피고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31,250,000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338,914,865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

소유자등	순번	재산의 표시	불인정이유
피고		**은행 대출채무(마이너스 통장) 86,163,509원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은행 대출채무 기준일은 2015. 12. 31.인 사실, 피고가 2016. 8. **,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기존의 **은행 마이너스 통장보다 00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이 유리하여 00은행으로 옮기면서 새로이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피고의 2017. 9. 5.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위 00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일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일시에 부담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제2 △△△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일이 2016. 7. **로 위 통장 개설일 이전이므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도 아니다) 등에 비추어보면, 00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위 예금계좌에서 기존의 **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00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대출채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채무가 2016. 8. 이후에도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